

환경법의 기본이해

목 차



차 례

- I. 환경문제
- II. 환경법 일반
- III. 환경권
- IV. 환경법의 기본원칙



I . 환경문제



환경의 의의

● 환경이란?

- 環境(두를 환, 지경 경) / Environment = environ(둘러싸다)의 명사형
- 환경 = 자연환경 + 생활환경 (환경정책기본법 §3-i)
- 자연환경: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 (§3-ii)
- 생활환경: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3-iii)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 환경오염이란?

-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3-iv)
- 인위적 활동 + 피해의 발생

● 환경훼손이란?

-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3-v)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 公害(公害)와의 구별

-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등장한 개념
 - “대기를 오염하는 매체·분진·악취 및 가스와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
- * 빛공해(Light Pollution)?

● 환경보전이란?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 (§3-vi)
- 보전 (conservation) vs. 보존 (preservation)



환경오염의 원인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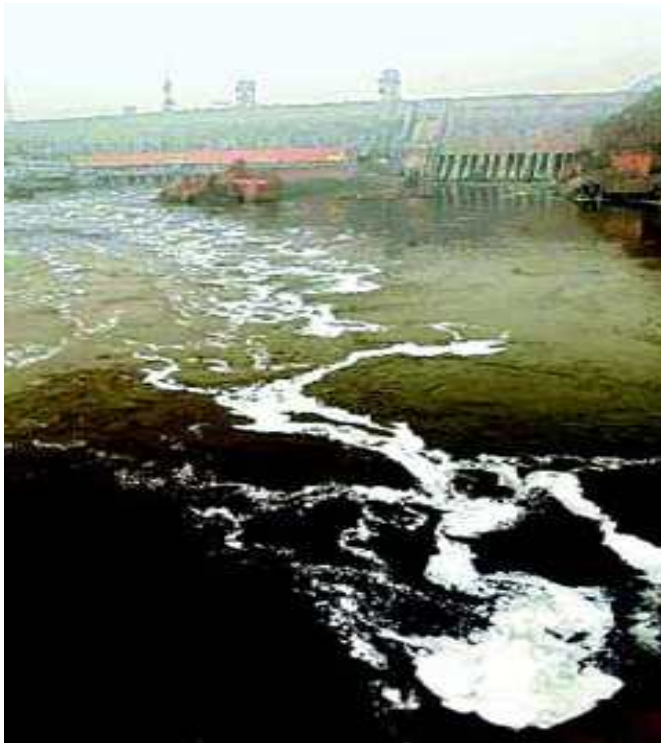
산업화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용량의 초과



- 환경용량: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3-vi)



현대 환경문제의 특성

오염의 광역성

분쟁당사자의 다수성

인과관계 규명 곤란

양태의 다양성

오염의 장기성·계속성·누적성

간접성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성

가해자의 수익성



Ⅱ. 환경법 일반

1. 환경법의 범위
2. 환경법의 역사
3. 환경법의 구분
4. 현행법 체계
5. 우리나라 환경법의 특성



환경법의 범위

● “환경법”은?

-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법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규제하고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관리 및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 환경부 관장 법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생활환경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소관법률도 포함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

공해방지법 시대 (1963~1977)

- 1963년 공해방지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환경법제가 처음 마련(1967년 시행)
- 전문 21개조로 구성된 비교적 간소한 법률
-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단일법적 입법형식
- 위생법적 성격

환경보전법 시대 (1977~1990)

- 미온적인 공해방지법의 한계 직면
→ 적극적으로 환경에 도모할 수 있는 법제확립 요구 → 환경보전법 제정
- 11장 70개조로 구성 :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규제 / 대기보전 / 수질 및 토양보전 / 소음·진동규제 / 사업자의 오염방지사업비부담 / 환경분쟁조정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

☆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1980)

- 형식상 환경권이 헌법상으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
- '80년 12월 개정 헌법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7년 개정 헌법 제35조: 헌법 제33조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함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1990~)

- 복수법주의에 입각한 환경법제도의 전환
- "환경 6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1990. 8. 1. 공포, 1991. 2. 1. 시행)
-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방향 설정
→ 개별 대책법으로 각 부문별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규율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1960 (6개 법률)	1970~1980 (9개 법률)	1990~2014 (51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
공해방지법 ('63.11.5 제정)	환경보전법 ('77.12.31 제정)	환경정책기본법	'90. 8. 1
		대기환경보전법	'90. 8. 1
		지속가능발전법	'07. 8. 3
		환경교육진흥법	'08. 3.21
		환경보건법	'08. 3.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96.12.30
		소음·진동관리법	'90. 8. 1
		약취방지법	'04. 2.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03.12.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 8.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9. 2.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2. 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2. 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2. 1.14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1960 (6개 법률)	1970~1980 (9개 법률)	1990~2014 (51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
		자연환경보전법	'91.12.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91. 5.31
		환경분쟁조정법	'90. 8.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입법)	'04. 3.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4.12.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06.10.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1.12.31
		석면피해구제법	'10. 3.22
		석면안전관리법	'11. 4.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12. 2. 1
	자연공원법 ('80. 1. 4 제정)	자연공원법	'80. 1. 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97.12.31
		습지보전법 (공동입법)	'99. 2. 8
		환경영향평가법	'99.12.31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1960 (6개 법률)	1970~1980 (9개 법률)	1990~2014 (51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
		토양환경보전법	'95. 1.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입법)	'03.12.3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공동입법)	'06. 3.24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 ('67. 3.30 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4. 2. 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2.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 6.12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83. 5. 1 제정)	한국환경공단법	'09. 2.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94.12.22
독물및극물에 관한법 ('63.12.13 제정)		화학물질관리법	'90. 8.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7. 1. 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 5. 22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1960 (6개 법률)	1970~1980 (9개 법률)	1990~2014 (51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
오물청소법 ('61.12.30 제정)	폐기물관리법 ('86.12.31 제정)	폐기물관리법	'86.12.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입법)	'06. 9.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2.12.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공동입법)	'07. 4.27
	합성수지폐기물 처리사업법 ('79.12.28 제정)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92.12.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3.12.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5. 1.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0. 1.21
하수도법 ('66. 8. 3 제정)		하수도법	'66. 8. 3
수도법 ('61.12.31 제정)		수도법	'61.12.3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6. 8
		먹는물관리법	'95. 1. 5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타 부처 소관 환경 관련 법령

부문별	법령명
대기오염 관계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너지법, 건설기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관계	해양환경관리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온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소음 관계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 반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주택법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타 부처 소관 환경 관련 법령

부문별	법령명
농업	농약관리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동물보호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수산·항만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산림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기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관광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광업법, 내수면어업법, 자연재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 대외무역법 등



환경법의 구분

환경법은 크게 **환경규제법**과 **환경구제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환경규제법

- 행정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형법: 개별 환경법상 벌칙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구제법

- 공법적 구제: 행정쟁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 사법적 구제: 손해배상청구
유지(留止)청구



환경법의 구분

환경법은 **국내환경법**과 **국제환경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제환경법

- Ramsar 협약
- CITES
- 생물다양성협약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나고야의정서
- 바젤협약
-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국내환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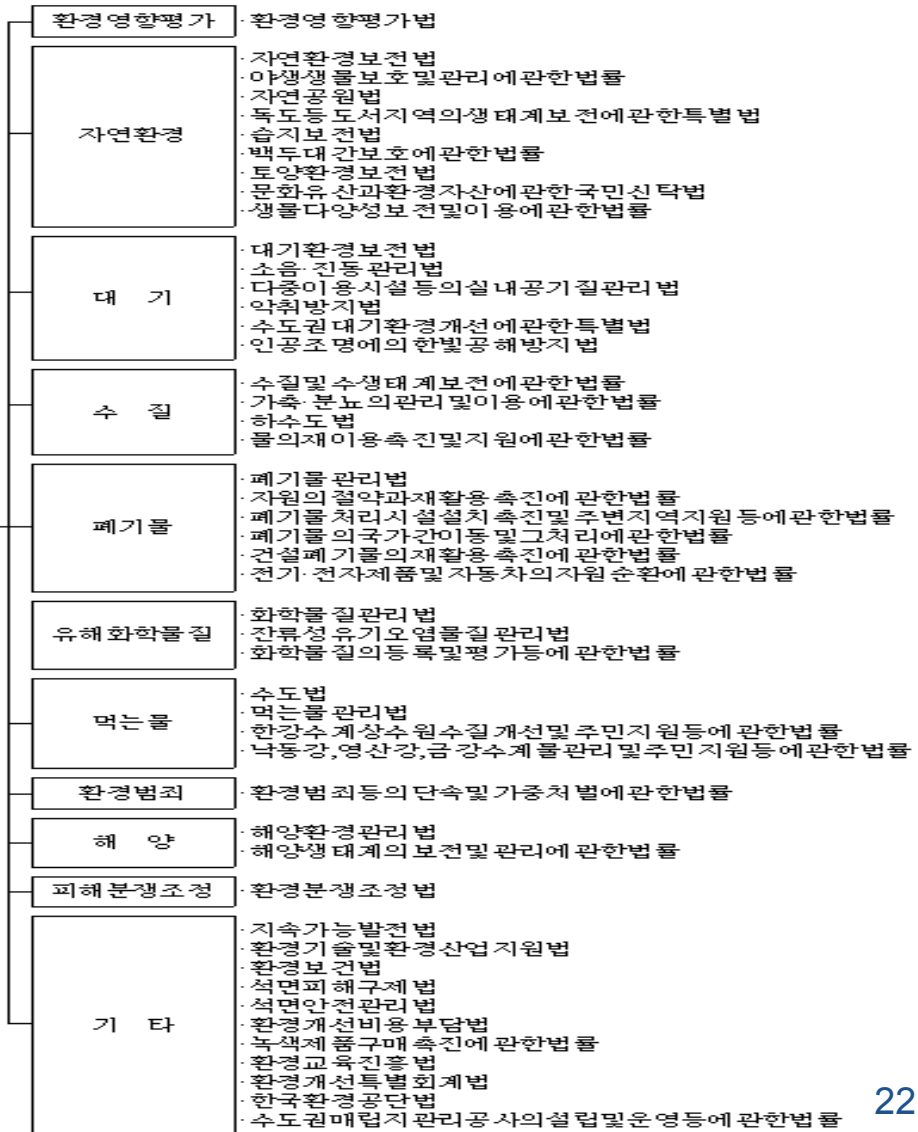
- ● 습지보전법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환경법 체계도

- 헌법 제35조
- 환경정책기본법
- 개별 환경관련법

헌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법의 특성

공법성(公法性)

다양성·복잡성

기술성·과학성

국제성

종합성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복수법체계

관리체계의 분산 / 환경매체별 관리

특별법의 제정 및 빈번한 개정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규제 또는 법률의 공백

국제성의 결여

정부주도적 규제 중심 / 경제적 유인수단 미비

환경오염 중심의 대증요법적 법규범



Ⅲ. 환경권

- | | |
|---------------|------------|
| 1. 환경권의 개념 | 2. 환경권의 대상 |
|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 환경권의 주체 |
| 5. 환경권의 내용 | 6. 환경권의 한계 |



환경권의 개념

헌법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972년
스톡홀름선언
원칙 1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1992년
리우선언
원칙 1

“인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제의 중심이 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보호대상

범위: 자연환경 + 생활환경

●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율대상 ●

-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율대상 ●

-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3-i)

●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

-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①)

● 헌법재판소의 입장 ●

-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헌재결 2009. 7. 31. 2006헌마711)



환경권의 법적 성격

종합적 기본권

-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

종합적 기본권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헌재결 2008. 7. 31. 2006헌마711)



환경권의 법적 성격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환경권

- **[새만금 사건]**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 허가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환경권의 법적 성격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환경권

-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국방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을 위한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이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존지역을 변경(축소)하고 고시한 사안에서,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대보존지역의 유지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회 등은 위 처분을 다룰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판결)



환경권의 법적 성격

사법상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사법상의 구체적 권리성 부정

	하급심	대법원
환경권	○	X
인격권	○	X
소유권	○	X



환경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의 태도

- **[부산대 사건]**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 **[봉은사 사건]**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환경권의 법적 성격

하급심 판결

- **[봉은사 사건(1심)]**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는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 다시 말하면 환경이익이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예를 들면 금전적 보상에 의한 해결을 수인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없는 한 **방지권에 기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환경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지법 1995. 9. 7. 선고 94카합6253 결정)



환경권의 법적 성격

음성 꽃동네 사건

- 원고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광산에서 금광의 탐광 및 채광을 위한 굴진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광산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침하되며, 지하수와 토양이 심하게 오염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환경침해가 발생할 경우 ○○광산 이웃 토지 소유자이거나 근접 토지 거주자들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며, 또 그 침해되는 환경적 이익이 그들의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판례 변경?



환경권의 주체

● 누가 환경권을 갖는가?

-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
- 최근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주체성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설령 미래세대에게 환경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

-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1호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

일조권 / 조망권 / 경관권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권리

쾌적한 주거 생활권

.....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재산권 등의 행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수인한도

- **[부산대 사건]** 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그 인접대지 위에 건축 중인 24층 아파트 중 18층 초과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 **[봉은사 사건]** 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부산대 사건

-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95다23378)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확성기 소음 사건

- 청구인에 대한 환경권 침해가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기본권의 보호의 무 위반이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서 인정되려면, 선거소음 피해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신적·육체적 법익 침해가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에 다다르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헌재결 2008. 7. 31. 2006헌마711)



IV.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2. 사전배려원칙
3. 원인자책임원칙
4. 협력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의 의

-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개발” (1987 브룬트란트 보고서)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리우 선언)

내 용

- 세대 간 형평
- 지속가능한(현명한) 이용
- 세대 내 형평
- 환경과 개발의 통합성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구체적 구현형태

환경정책
기본법
제2조

-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구체적 구현형태

환경정책
기본법
제9조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법
제3조 제1호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법적 성격

- 구체적 효력 (X)
- 선언적 / 프로그램적 효력

● 문제점

- 경제개발이 가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보전과 개발을 상호 절충하기 쉽지 않음
-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함으로 인하여 구속력을 약화시킴



사전배려원칙

의 의

Precautionary Principle

1982년
세계자연헌장

자연에 중대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활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1990년
베르겐
각료선언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연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992년
리우선언
원칙 15

각국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사전배려 조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배려원칙

의 의

Precautionary Principle

1992년
기후변화협약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사전배려 조치를 지연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지구적인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이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6년
런던조약
의정서

회원국은 동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해양환경에 투입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이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투입과 그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투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배려 접근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전배려원칙

요건

- 1992년 리우 선언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의 우려
- 1992년 OSPAR 협약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 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피해, 쾌적성의 손실 등의 우려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 2011년 POPs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가 해당 화학물질이 장거리에 걸친 자연적 이동의 결과 지구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할 것

사전예방원칙(Preventive Principle)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증거를 요한다.



사전배려원칙

● 효과

- 1992년 OSPAR 협약 당사국: 사전배려원칙에 기초한 예방조치 의무
- 2011년 POPs 협약 협약 기구: 사전배려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의무
- 2000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사전배려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의무화 (X)

-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효과는 다양하다.

(a) 불확실성은 부작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b) 불확실한 리스크는 규제를 정당화한다.

(c) 입증책임의 전환

- 주의의무의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 사전예방원칙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보다 조기에, 규제수준을 보다 엄격하게 ...



사전배려원칙

● 법적 성격

국제관습법인가?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따라야 하는 원칙인가?

- 판례: 신중한 입장. 판단 회피 경향.
- 학설: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 부정설이 다수설

국제환경법의 행동규범으로 침투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
보호대상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배려원칙의 제도화 경향 大



사전배려원칙

● 대표적 적용영역

-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 전자파(ElectroMagnetic Fields: EMFs)
-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POPs 등)

● 구체적 구현형태

-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원인자책임원칙

의 의

Polluter Pays Principle: PPP

- 환경오염 방지, 제거, 회복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가?
-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 ① 오염의 사전방지 책임
 - ② 오염된 환경의 사후회복 책임
 - ③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도원칙으로 채택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란 오염원인자가 환경을 수용가능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당국이 결정한 오염 저감 및 방지 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자책임원칙

의 의

1992년
리우선언
원칙 16

국가는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적 성격

- 구체적 효력 (X)
- 선언적 / 프로그램적 효력



원인자책임원칙

원인자란?

- 형식적 생활관계설 / 사실상의 지배영역설 / 적합지위설 등

구체적·법적 의미를 갖는 원인자의 범위는

개별 환경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대상자** (폐기물관리법 §48)

폐기물을 처리한 자 +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원인자책임원칙

원인자란?

토양정화책임자 (토양환경보전법 §10의4①)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의무자 (석면피해구제법 §§31~3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조·사용허가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 특별분담금을 적용)



원인자책임원칙

● 비 용

- 현실비용(오염방지 및 회복을 위한 비용)
- 당위비용(환경비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지출했어야 할 비용)

Ex. 배출부과금

● 원칙의 확장

- 수익자(수혜자)부담원칙

환경수익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

Ex.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비용을

서울 등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률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협력원칙

의의

- 환경문제는 한 개인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
- 환경침해를 예방·제거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나, 환경침해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활동으로 인해 초래되기 때문에 국가의 환경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모두의 협력이 요구됨

법적 성격

- 구체적 효력 (X)
- 선언적 / 프로그램적 효력



협력원칙

구체적 구현형태

환경정책
기본법
제5조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원칙

● 문제점

- 국가와 국민, 기업 간의 상호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절차적 보장, 정보공개 등이 요구됨
- 공공참여 및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야합 내지 회유로 전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